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6. 2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련시설을 효율적 운영하고,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위탁 운영 단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(운영 등)를
현행과 같이 하고 제1항의 구미시설공단을 삭제함.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7조(운영 등)를

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“구미 시설공단”을 삭제한다.

제7조(운영 등)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(교)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기술
2. 책임감·능력·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
3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4.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·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(이하 “위탁운영기관”이라 한다)은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위탁운영기관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시장은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위탁운영기관은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운영 등) ① <u>시장</u> <u>은 수련시설을 효율적</u> <u>으로 운영하기 위하여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종합적으로 검토하여</u> <u>구미시설공단, 청소년</u> <u>관련학과가 있는 대학</u> <u>(교), 「청소년기본</u> <u>법」 제3조제8호에 따</u> <u>른 청소년단체 등에</u> <u>위탁하거나 법인을 설</u> <u>립하여 위탁 운영할</u> <u>수 있다.</u> 1. <u>위탁사무 수행에</u> <u>필요한 인력·장비</u> <u>·시설 및 기술</u> 2. <u>책임감·능력·공</u> <u>신력 및 재정적 부담</u> <u>능력</u> 3. <u>사업계획의 적정성</u> <u>및 타당성</u> 4. <u>관련 분야에 대한</u> <u>경험·전문성 및 사</u> <u>무처리 능력</u>	제7조(운영 등) ① <u>시장</u> <u>은 수련시설을 효율적</u> <u>으로 운영하기 위하여</u> <u>「청소년활동 진흥</u> <u>법」 제16조의 규정에</u> <u>따라 청소년단체에 그</u> <u>운영을 위탁할 수 있</u> <u>다.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	제7조(운영 등) ① <u>시장</u> <u>은 수련시설을 효율적</u> <u>으로 운영하기 위하여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종합적으로 검토하여</u> <u>청소년관련학과가 있</u> <u>는 대학(교), 「청소년</u> <u>기본법」 제3조제8호</u> <u>에 따른 청소년단체</u> <u>등에 위탁하거나 법인</u> <u>을 설립하여 위탁 운</u> <u>영할 수 있다.</u> 1. <u>(현행과 같음)</u> 2. <u>(현행과 같음)</u> 3. <u>(현행과 같음)</u> 4. <u>(현행과 같음)</u>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(이하 "위탁운영기관"이라 한다)은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<삭 제>	②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 ⑤ 위탁운영기관은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	③·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	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